2002. 9. 18(수) 제84회제1차정례회제4차본희의

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회운영위원회

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및제출자: 2002. 8. 27. 제천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8. 27.

다. 상정일자: 2002. 9. 2(제84회제제천시의회1차정례회의회운영위제1치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민경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제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2조(기능) : 자문에 응하는 사항
 -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
 -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
 -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
 - 의견수렴에 필요한 공청회, 토론회, 세미나등 개최
 -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정책적 자문
 - 기타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
- 제3조(구성)
 - 의장, 부의장, 상임위원회위원장을 당연직위원으로하여 15인이내
 -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, 부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, 간사는 사무국장

【제84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원회 부록】

- 제5조(위원의 위촉) :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의장이 위촉
 - 분야별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지역실정에 정통한 자
 -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자로서 의회가 인정한 자
 - 관내 소재 대학교의 교수이상의 전임교원
 - 기타 의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- 제6조(임기) :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, 보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
- 제7조(회의 및 자문)
 -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 소집.
 - 의장, 상임위원장, 의원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자문위원과 협의하여 자문할수 있다. 다만, 자문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박용태)

- 지방자치법 제15조(조례)를 보면
 - "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음.
- 본 조례의 내용을 보면
 -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에만 응하게 할뿐 주민에게 권리제한, 의무부과, 벌칙등을 규정하는 조례가 아니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위법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,
 - 위원회 참석수당등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본 조례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"없음"

- 5. 소 수 의 견 " 없 음 "
- 6. 토 론 요 지 " 없 음"
- 7. 심 사 결 과 "원안가결"
- 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 1 부. 끝.